

의안번호	제 646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월 일 (제 329회)

##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4년 3월 3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46
------------	-----

제출연월일 : 2014년 3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됨(2014. 7. 1. 시행)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도세 감면율 적용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주·청원 통합후 적용할 도세 감면율 특례 규정 신설(안 제12조)
  - 통합시 설치 이후에도 종전의 청원군지역은 통합시가 설립된 때  
부터 5년간 통합전 청원군 지역과 동일한 감면율 적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안 제16조 및 제18조)

## 3. 의안전문 : 불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 5. 관계법령 발췌 : 불임

##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도세 감면율 적용 특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의 경우 통합되기 전 청원군 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3조 및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청주시가 설치된 때부터 5년간 통합되기 전 청원군 지역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6조 중 “지방세”를 “도세”로, “제99조”를 “제184조”로 한다.

제18조 중 “지방세”를 “도세”로, “제96조”를 “제180조”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 신 설 &gt;</p> <p>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u>지방세</u>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u>제99조</u>를 준용한다.</p> <p>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u>지방세</u>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u>제96조</u>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12조(도세 감면율 적용 특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의 경우 통합되기 전 청원군 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3조 및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청주시가 설치된 때부터 5년간 통합되기 전 청원군 지역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p> <p>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 -----<u>도세</u>----- ----- -----. ----- ---- <u>제184조</u> -----.</p> <p>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 -----<u>도세</u>----- ----- -----<u>제180조</u> ----- -----.</p>

## 관련 법령 발췌

### □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종교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1.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②~③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등) ①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청주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충청북도 청주시 일원과 청원군 일원

[시행일 : 2014.7.1]